

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259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10.29.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원도심활성화권역 기금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」의 규정에 맞게 협행규정의 일부를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지원사업의 심의절차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 관련조문을 삭제함(안 제29조제6호).
- 나.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시 「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 대상 중 공무원 및 시의원을 삭제하고 외부전문가 및 시민으로 정함(안 제30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」, 「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타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- 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- (3) 입법예고 : 2007. 9. 7. ~ 9. 27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제6호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“위촉”을 “임명 또는 위촉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“제2항제1호”를 “제2항제3호”로, “각 호의 1”을
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「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결정된 원도심활성화권역 및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사업 및 사업계획으로 본다.

제3조(기금에 대한 경과조치) 「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·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의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이를 승계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기능) (생략)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<u>6.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도 선정 및 사업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30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<u>위촉하여야</u> 하며, 이 경우 시 소속 공무원 3인,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5인, 자치구 소속 공무원 5인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제2항제1호</u>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원·자격·선정기준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	<p>제29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〈삭제〉</u>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0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임명 또는 위촉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제2항제3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 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

제6조(위원회의 주민참여) 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.

②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, 노인,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, 법령 및 타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